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694

2026. 3. 26.
경제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6. 3. 13. 강남구청장(보건행정과)

나. 상정의결

- 제33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(2026. 3. 26.)

“ 수정가결 ”

2. 제안이유(제안설명 : 보건소장 이종철)

○ 강남구 사업장 직장인의 금연 실천을 유도하고 간접흡연을 예방하기 위한 ‘금연성공지원금(금연펀드)’ 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함.

3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적용범위 정비 (안 제1조, 제3조)

나. 금연구역 지정 장소에 대한 적용법률 및 조문 정비 (안 제5조제1항)

다. 사업장 금연성공지원금(금연펀드) 지급 추진근거 신설 (안 제9조)

라. 과태료 조항 자구정비 (안 제10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3조, 제8조, 제34조

나. 예산조치 : 2026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반영 예정

다. 합　　의 :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('25. 12월)

라. 기　　타 : 입법예고(2026.01.30.~02.19.) 기간 접수된 의견 반영(안 제10조에 대한 수정의견)

5. 검토의견(전문위원 : 이주현)

가. 개정 취지 및 배경

○ 금연실천의 중요성

- 흡연은 개인의 건강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체의 건강과 경제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는 사회 문제임. 2022년 질병관리청이 조사하는 흡연폐해 비용추계에 따르면 △직접흡연으로 인해 연간 7만 명 이상의 사망자, △흡연 관련 연간 13조 원 이상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되고,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갈등이 심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함.

- 특히 2020년부터 3년 연속 직접흡연에 기인한 사망자 수가 증가한 사실을 살펴보면, 국민건강관리 정책에서 금연실천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< 국내 연도별 직접흡연 기인 사망자 수 >



※질병관리청 조사 자료

○ 금연펀드 도입

- 금연펀드는 2000년대 초반 대기업 중심으로 도입된 기업 단위 후생복지 정책의 일종인데, 사회 전반에 알려지면서 2020년대부터는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에서 지역사회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펀드를 운영하기 시작함. 초반에는 금연시도 확인 시 금연성공금을 지급하는 단순한 방식이었으나, 1년 이상 장기 금연여부를 다양한 방법(니코틴 모발 검사[1] 등)으로 검증한 후 금연성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발전함.

- 이에 따라 강남구에서도 직접흡연으로 인한 지역사회 폐해를 줄이는 다양한 방편을 금연사업에 도입하고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됨. 강남구 보건소는 <강남구 사업장 금연펀드> 운영을 위해 2025년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요청함.

1) **니코틴 모발 검사:** 검사자의 모발을 채취하여 축적된 니코틴을 정량화하는 검사방법. 장기간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 노출 여부를 확인하는 정밀검사이고, 비흡연자의 모발 니코틴 농도가 높으면 간접흡연 피해를 입은 것으로 간주함.

나. 검토 내용

○ 조문 정비

- **안 제1조**는 이 조례가 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구청장이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임을 밝히는 것임.

- **안 제3조**의 경우 현행 조문에는 목적 규정에 기재해야 했을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던 부분을 안 제1조로 이동하여 정정한 것이고 타당함.

- **안 제5조부터 제9조제1항까지**는 입안 심사 기준에 따라 조문의 표현을 다듬고 순서를 변경하는 정비를 한 것이고 바람직하다고 보임.

- **안 제10조**와 같이 정비하는 것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의 일종이어서 상위법령에 이미 정하여진 과태료 관련 규정의 중복을 피하는 조치이므로 타당함.

○ 사업장 금연펀드 운영

- **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**은 <강남구 사업장 금연펀드> 사업 참여 및 예산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장과 사람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, 이를 통해 강남구 관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의 직장인에게 '직장인 금연성공지원금'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- 실질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대상 사업장을 ①근로기준법의 각종 근로조건을 전면적으로 적용받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, ②금연사업이나 금연홍보를 시행하는 사업장, ③일정 기간 금연에 성공한 직원에게 현금이나 현물 등을 지급하는 사업장이라는 조건을 두어 한정한 것은 사업 목표의 달성 및 성과 측정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

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.

< 강남구 사업장 금연펀드 사업 구조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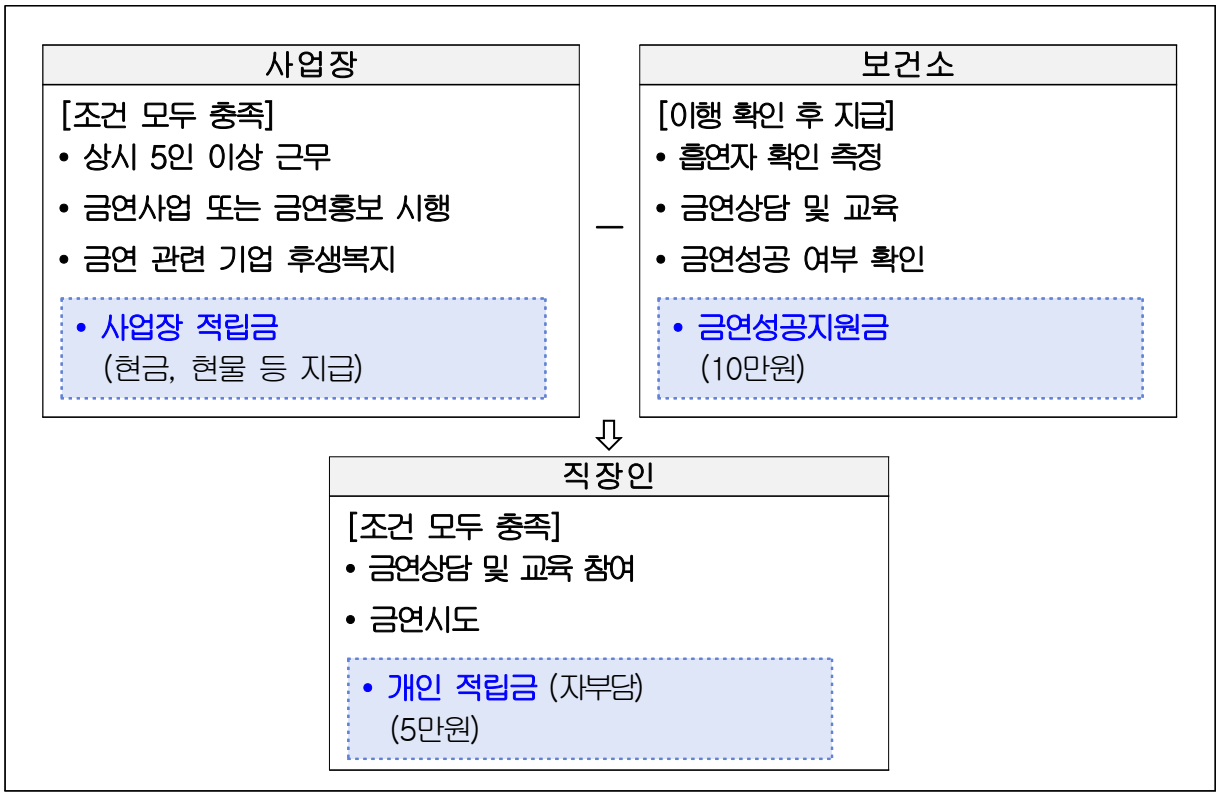

사업장-보건소-직장인 공동참여 매칭형 적립식 펀드

다. 종합 의견

○ 금연 관련 사회보장제도의 신설

- 기업체가 밀집된 지역 환경 특성상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도입하는 <강남구 사업장 금연펀드>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관리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이면서 기존의 금연교육, 금연상담, 금연치료를 모두 연계하여 이행할 수 있고, 금전적 보상에 따른 동기 부여가 포함된 사업이므로 높은 성공률이 기대됨.

- 다만, 보건복지부 협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의 실질적 운영에 있어서 **①측정 지표 보완**: 금연기간 충족(성공) 및 사후관리(성공 후 유지) 확인, **②측정 방식 보완**: 코티닌 검증(소변검사 등) 및 호기 중 CO측정 검증을 병행하도록 권고하므

로,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.

< 강남구 사업장 금연펀드 운영에 대한 보건복지부 회신 >

○ 검토 결과 '**협의완료**'

- 다만, 6개월 금연성공률 단일지표보다는 금연 성공 후 유지율 확인과 같은 사후관리가 필요하며, **사업 시행일로부터 3년간 매년 사업성과*를 복지부에 제출 필요**

* 성공률, 유지율 또는 재흡연 여부 등 모니터링 결과

- 코티닌 단독 검증보다는 CO 측정 병행 권장

- 국가건강증진정책 지원을 위해 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 근거하여 설치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<국가금연지원센터>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소 금연클리닉 관련 정책개발 및 상담도 하므로, 금연펀드 참여자의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관련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보임.

[붙임] 참고 자료: 금연활동 지원 유사 사례: 조례 및 유지 프로그램

- 강남구보다 앞서 금연성공지원금 제도를 도입한 노원구[2]의 경우 △금연구역 흡연 단속으로 부과된 과태료 수입을 다시 금연성공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으로 활용하고 있으며, △금연성공에 대해 최대 36개월까지 사후관리를 해서 금연 성공 후 장기 유지를 사업 목표로 삼았고, △금연성공지원금을 일시 지급이 아닌 단계적 지급[3]으로 운영하므로 참고 바람.

(36개월 장기금연 성공 시 누적수령액 60만원 달성 가능)

2) **노원형 금연모델**: 제38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.

3) 금연 성공 시 12개월 10만 원, 24개월 20만 원, 36개월 30만 원 등 최대 60만 원의 성공지원금 지급.

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[시행 2019. 5. 30.]
제2조(지원금 지급대상 등) ① 「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연성공 지원금(이하“지원금”이라 한다) 지급대상은 노원구 보건소 금연클리닉(이하 “금연클리닉”이라 한다)등록일로부터 금연성공 기준일까지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거주자를 말한다. ② 금연성공 기준일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금연에 성공하였다고 인정하는 날을 말한다.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다음 각 호의 금연 확인 검사 도래일(이하 “도래일”이라 한다)부터 금연성공 기준일 사이에 전출하는 경우, 거주지는 금연 확인 검사 도래일을 기준으로 한다. 1. 1차 도래일: 금연클리닉 등록일부터 12개월이 도래한 날 2. 2차 도래일: 금연클리닉 등록일부터 24개월이 도래한 날 3. 3차 도래일: 금연클리닉 등록일부터 36개월이 도래한 날 ③ 제2항의 금연성공 기준일별 지원금은 각 호와 같다. 1.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: 10만원 이내 2.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: 20만원 이내 3.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: 30만원 이내

○ 강남구 사업장의 건강생활 여건 개선

- 이 사업의 시행으로 보건소와 사업장과 개인이 결합하여 강남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많은 직장인들이 금연에 도전할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흡연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심각한 폐해가 차츰 감소되고, 건강생활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.

※ 관계 법령

국민건강증진법 [시행 2026. 3. 19.] [법률 제20813호]
제3조(책임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.
②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제8조(금연 및 절주운동등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·홍보하여야 한다.
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·연구를 하는 법인 또

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금연을 위한 조치)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34조(과태료)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2.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부과·징수한다.

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[시행 2026. 3. 19.] [대통령령 제36171호]

제34조(과태료 감면의 기준 및 절차)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.

1. 법 제12조제1항·제2항에 따른 보건교육(흡연의 폐해, 금연의 필요성 등에 관한 교육으로 한정한다) 또는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건강관리사업으로 실시하는 금연교육

2.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건강관리사업으로 실시하는 금연치료 및 금연상담 등 금연지원 서비스

②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과태료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교육과 금연지원 서비스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.

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제2항에 따라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과태료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.

1.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신청한 경우: 교육을 신청한 날부터 1개월

2.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연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: 금연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날부터 6개월

④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를 유예받은 사람이 그 유예기간 이내에

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과태료 감면 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 또는 최근 2년간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2회 이상 감면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면할 수 없다.

1.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: 100분의 50 감경
2.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: 전액 면제

⑤ 제4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의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.

⑥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를 유예받은 사람이 그 유예기간 이내에 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.

⑦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를 유예받은 사람이 그 유예기간 동안 법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.

흡연 과태료의 감면기준 등에 관한 규정 [시행 2022. 7. 1.] [보건복지부고시 제2022-167호]

제3조(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의 기준)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의 종류와 이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2. 금연지원 서비스

가. 보건소 금연클리닉: 3개월 이상 등록 유지하고 4회 이상 대면 상담

※참고 자료: 금연활동 지원 유사 사례: 조례 및 유지 프로그램

사례 1	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[시행 2025. 9. 24.]
제17조(금연클리닉) 구청장은 금연클리닉을 설치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 1. 금연상담, 금연교육, 금연보조제, 홍보물 제공 등 2. 금연에 성공한 구민에게 금연성공 기념품 제공 3. 청소년 전용 상담실 및 상담원 운영	

사례 2	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[시행 2025. 4. 2.]
제17조(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) ② 구청장은 구민의 금연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·운영하고 금연상담, 금연보조제,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.	

사례 3	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[시행 2025. 7. 17.]
제11조(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) ② 구청장은 구민의 금연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, 금연보조제,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. ③ 구청장은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구민의 흡연예방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금연교육 및 홍보 등의 금연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. ④ 구청장은 금연환경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	

사례 4	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[시행 2024. 12. 31.]
제9조(금연교육 및 금연 활동지원) ② 구청장은 구민의 금연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, 금연보조제,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. ③ 구청장은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금연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. ④ 구청장은 금연 환경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	

사례 5	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[시행 2024. 9. 26.]
제10조(금연클리닉) ① 구청장은 구민의 금연성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고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 등을 제공할 수 있다. ② 구청장은 금연클리닉에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, 사업체, 학교 및 그 밖에 상담을 요청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.	
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[시행 2023. 12. 28.]	
제4조(세출) ①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 1. 금연 성공자에 대한 지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연 성공자에게 아래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. 1. 금연클리닉 등록일부터 금연성공 기준일까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: 지원금 1인당 60만원 이내 2. 지원금은 평생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.	



6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생략”

7. 토론 요지 : “생략”

8. 심사 결과 : “수정가결”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

10. 기타 사항 : “없음”

붙임 1.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2.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